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와 금지된 의약품 오인 광고여부 판단 - 광고업무 3개월 정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구합85584 판결



## 1. 문제된 홍보 문구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복플렉스™', '시카블록복플렉스™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2. 법령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 -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표현 -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 3. 행정법원 판결 - 제재처분 취소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 등의 표현과 같이 마치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금지표현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화장품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그와 같은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고, 이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보도자료

표시광고분쟁, 부정경쟁, 공정거래,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계약분쟁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